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0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전현희 · 이건태 · 이성운
박균택 · 장경태 · 김기표
김상욱 · 김승원 · 최혁진
박지원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 구조가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관 중심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의 독립성 ·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전담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실현하는 방법임.

또한 윤리감사관에 법관 출신을 임명할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초래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며 법원 외부인사 중에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등 판사회의가 심의·의결한 사법행정 사항은 판사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사회의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판사회의 구성을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등 판사회의가 심의·의결한 사법행정 사항은 판사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 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둠(제19조제1항).
- 라.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67조 신설).
- 마.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7조의2제1항 신설).
- 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법관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7조의3제1항 신설).

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67조의4제1항 신설).

아.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처장 비서관 및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67조의7 신설).

자.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며, 감찰관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의2 삭제, 안 제81조의13 신설 등).

차.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감찰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안 제81조의15 신설).

카. 감찰관은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1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사로”를 “당해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은 판사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지원에 한정한다.

1.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출절차(호선 포함)
2. 당해 법원의 장 후보의 선출(후보는 단수 또는 복수로 선출할 수 있다)
3. 당해 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판사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기본원칙(법률 및 대법원규

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판사의 사무분담의 확정

6.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8.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9. 그 밖에 당해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당해 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둔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 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여 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법행정 또는 법관독립에 관하여 의견 표명할 사항

2.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사법행정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에 건의할 사항

3.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을 “대법원 ·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법원과”를 “대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관
리관 또는 법원이사관 · 시설이사관 · 공업이사관 · 전산이사관으로 보
하며, 고등법원과”로, “법원부이사관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을 “법
원부이사관 · 법원서기관 · 시설부이사관 · 시설서기관 · 공업부이사관 ·
공업서기관 · 전산부이사관 · 전산서기관 · 법원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
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를 “관장하며,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
니하는 한 대법원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의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관장한다.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사무의 지휘 · 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이나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
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을 “정무직”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5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대법원장은”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10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전단 중 “각계 전문”을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3.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8.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9.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을 “특허법원장”으로, “회생법원장”을 “회생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장”으로, “보한다”를 “보하되 사법연수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장은 제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된 각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중에서 보한다(후보가 단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보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선출절차를 거친 법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법원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평정을 실시하고”를 “평정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실시하며,”로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인사원칙의 공개) 사법행정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47조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49조제4호 및 제6호 중 “대법원장”을 각각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50조 중 “경우에”를 “경우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장은 법관”을 “법관”으로, “2년”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2년”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법원장은 법관”을 “법관”으로, “할”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이를 명할”로 한다.

제53조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53조의2제3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4조의3제3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편 제1장의 제목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원의 인사·징계·예산(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한다)·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항
2.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요구
4.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5. 그 밖에 사법행정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관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
2.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8.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9.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1명

제67조의3(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관으로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③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 또는 검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은 법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시 추천, 위촉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되, 새로 임명,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7조의5(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검사, 헌법연구관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과 검사가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법관과 검사인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⑥ 사법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거나 대법원장이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의 경우, 사법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관회의나 대법원장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기타 사법행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처장비서관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에는 실·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고,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사무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8(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처장이 될 수 없다.

③ 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이사관 또는 전산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공업서기관·전산이사관·전산부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

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부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 중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을 “피고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71조 및 제7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2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법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장이 보하거나”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보하거나”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74조의4제1항 중 “법원행정처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4조의5제2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1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로, “거쳐”를 “받아 대법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장이 보하거나”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법원장이 보하거나”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를 “사법행

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76조의6제2항 본문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81조제3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9편의 제목 “법원의 경비”를 “감찰관”으로 한다.

제9편에 제81조의13부터 제81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3(감찰관의 설치 및 임명 등) ① 대법원에 감찰관을 두고, 그 소속직원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감찰관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4(감찰관 소속직원) ① 감찰관 소속직원은 감찰관이 추천하고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감찰관이 추천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감찰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이외의 사람을 감찰관 소속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추천·임명절차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식·기간 및 파견 근무 중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81조의16(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감찰관은 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찰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찰관은 감찰을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81조의17(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받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1조의18(감찰 사항)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제81조의19(징계결정전 조치 요청) 감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에게 당해 법관에 대하여 「법관징계법」 제7조의6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관징계법」 제7조에 따라 징계가 청구된 사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3.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제81조의18에 따라 감찰을 받는 사람
- 제82조 앞에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편 법원의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행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행정처장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제19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사법행정위원회의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고시 ·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의의 행위 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그 밖의 행위 또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사법

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보직 및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직·임용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보하거나 임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감찰관의 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윤리감사관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감찰관이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u>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② <u>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③ <u>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u>사법행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u> -----. <u><삭 제></u> <u><삭 제></u>
제9조의2(판사회의) ① <u>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u>	제9조의2(판사회의) ① ----- ----- ----- ----- -----

판사회의를 둔다. <단서 신
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
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신 설>

----- .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은 판사회의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 당해 법원에 소
속된 판사 전원으로 -----

--.

③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다만, 지원의 경
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지원에
한정한다.

1.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을 위한 선출절차(호선 포함)
2. 당해 법원의 장 후보의 선
출(후보는 단수 또는 복수로
선출할 수 있다)
3. 당해 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판사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
당에 관한 기본원칙(법률 및
대법원규칙에 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 한정한다)
5. 판사의 사무분담의 확정
6.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신 설>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8.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9. 그 밖에 당해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당해 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둔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 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여 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법행정 또는 법관독립에 관하여 의견 표명할 사항

	<u>2.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사법행정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에 건의할 사항</u> <u>3.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관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u> <u>4. 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u>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u>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u>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u>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u>	① <u>대법원 ·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u>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관리관 또는 법원이사관 · 시설이사관 · 공업이사관 · 전산이사관으로 보하며, 고등법원과</u> -- ----- ----- -----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제13조(대법원장) ① (생략)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생략)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단서 신설>

-----법원부이사관 · 법원서기관 · 시설부이사관 · 시설서기관 · 공업부이사관 · 공업서기관 · 전산부이사관 · 전산서기관 · 법원사무관-----.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대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장하며,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법원의-----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법행정위원회) ① -----

-----사법행정위원회----. 다만, 대법원의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관장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 예산 · 회계 · 시설 · 통계 · 송
무(訟務) · 등기 · 가족관계등록
· 공탁 · 집행관 · 법무사 · 법령
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생 략)

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
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 ⑤ (생 략)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
사무의 지휘 · 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사법행정위원회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
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
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
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
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무직-----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삭 제>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

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부) ① ~ ④ (생략)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1조(법관의 임명) ①·② (생략)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

제27조(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법행정위원회는-----

-----.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법관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

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2(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① (생략)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법원행정처장

<신설>

3. ~ 6. (생략)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신설>

<신설>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

-----.

제41조의2(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3명

-----.

③ -----

-----.

1. (현행과 같음)

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3.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삭제>

8.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 하는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9.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10. -----인권 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

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생 략)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
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
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 ⑨ (생 략)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
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
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
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

④ -----호선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
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직) ① -----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

② -----
특허법원장-----

-----회생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장--
-----보하되 사법
연수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
원의 장은 제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된 각 당
해 법원의 장 후보 중에서 보

<신 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생략)

<신 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

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한다(후보가 단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보로 보한다).

③ 제2항의 선출절차를 거친 법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수립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평정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실시하며,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인사원칙의 공개) 사

법행정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

-----사법행정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을 -----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한다. ②·③ (생략) 제47조(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 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 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 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u>인사위 원회의 심의를</u> 거쳐 대법원장 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u>대법원장의 허가</u> 없이 보수 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생략) 6. <u>대법원장의 허가</u>를 받지 아 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 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생략) 제50조(과전근무) 대법원장은 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 직) ----- ----- ----- ----- ----- ----- -----<u>사법행 정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 제49조(금지사항)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사법행정위원회</u>----- ----- 5. (현행과 같음) 6. <u>사법행정위원회</u>----- ----- ----- ----- 7. (현행과 같음) 제50조(과전근무) -----
--	--

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
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휴직) ① 대법원장은 법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
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
(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
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
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

-----경우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

-----.

제51조(휴직) ① 법관-----

-----사법행
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2년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겸임 등) ① 법관-----

-----하
는 경우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이를 명할-----.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법원직원) -----
-----사법행정위원회가-----

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② (생략)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u>대법원장이 임용한다.</u> ④ ~ ⑥ (생략)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 ③ (생략) ④ <u>대법원장은</u> 지식재산처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4조의3(조사관) ①·② (생략) ③ <u>대법원장은</u>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4조(법원경위) ① (생략)	----- -----.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법행정위원회가</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사법행정위원회는</u>----- ----- -----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3(조사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사법행정위원회는</u>----- ----- -----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법원경위)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생략)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

② -----
-----사
법행정위원회가-----
---.

③ (현행과 같음)

제1장 사법행정위원회

제67조(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원의 인사·징계·예산(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한다)·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항
2.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요구
4.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5. 그 밖에 사법행정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을 둔다.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
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
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
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신 설>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관으로서 퇴직한 날부
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
명

2.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
하는 법관 2명(이 경우 1명

<신 설>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8.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9.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1명

제67조의3(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관으로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③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 또는 검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은 법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

<신 설>

언할 수 있다.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67
조의2제2항에 따라 다시 추천,
위촉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
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한 경
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
으로 본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는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임
명 또는 위촉하되, 새로 임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
작한다.

<신 설>

제67조의5(겸직금지 등) ① 위원
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
(職)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
원.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검사, 헌법연구관은 예외로

<신 설>

한다.

3.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과 검사가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법관과 검사인

<신 설>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⑥ 사법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거나 대법원장이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의 경우, 사법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관회의나 대법원장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기타 사법행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

처)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처장비서관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

<신 설>

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에는 실·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고,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사무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8(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처장이 될 수 없다.

③ 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

장은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이사관 또는 전산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공업서기관·전산이사관·전산부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부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

----피고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삭 제>

시설부이사관 · 시설서기관 · 공
업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
부이사관 · 법원서기관 · 시설부
이사관 · 시설서기관 · 공업부이
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
한다.

⑤ 실장 · 국장 및 과장은 상사
의 명을 받아 실 · 국 또는 과
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
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71조의2(윤리감사관) ① 대법
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
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
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
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
계사

<삭 제>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
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
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
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
람

④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
는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
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 전에 해당 윤리감사관에
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조직) ① (생 략)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
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

제73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행정위원회-----

독한다. ③ ~ ⑤ (생략)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u>대법원장이</u>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대법원장이</u>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u>대법원장이</u> 임명한다. 1. ~ 5. (생략) ③·④ (생략)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u>법원행정처장은</u>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 ----- -----<u>사법행정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치고 <u>대법원장</u>-----. ② ----- ----- -----<u>사법행정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u>대법원장이</u> 보하거나----- -----<u>사법행정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u>대법원장이</u> 임명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u>사법행정위원회는</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
---	--

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6조의2(조직) ① (생략)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⑤ (생략)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행정위원회가-----

-----.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행정위원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받아 대법원장이
-----.

② -----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법원장
이 보하거나-----사법행정

<u>한다.</u>	<u>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u> <u>대법원장이 임명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생략)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u>대법원장이</u>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u>사법행정위원회가</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조직) ① (생략)	제77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u>대법원장의</u>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u>사법행정위원회</u>----- ----- -----.
제81조(조직) ①·② (생략)	제81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u>대법원장의</u>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u>사법행정위원회</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편 <u>법원의 경비</u>	제9편 <u>감찰관</u>
<u><신설></u>	<u>제81조의13(감찰관의 설치 및 임</u>

명 등) ① 대법원에 감찰관을 두고, 그 소속직원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감찰관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신 설>

<신 설>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4(감찰관 소속직원) ①

감찰관 소속직원은 감찰관이 추천하고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감찰관이 추천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감찰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이외의 사람을 감찰관 소속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추천·임명절차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식·기간 및 파견근무 중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으로 임

<신 설>

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제81조의16(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감찰관은 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찰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

<신 설>

다.

③ 감찰관은 감찰을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81조의17(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받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1조의18(감찰 사항)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신 설>

제81조의19(징계결정전 조치 요청) 감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

<u><신 설></u>	<u>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u> <u>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장 또</u> <u>는 각급 법원의 장에게 당해</u> <u>법관에 대하여 「법관징계법」</u> <u>제7조의6에 따른 조치를 요청</u> <u>할 수 있다.</u> <u>1. 「법관징계법」 제7조에 따</u> <u>라 징계가 청구된 사람</u> <u>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u> <u>3.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u> <u>중인 사람</u> <u>4.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제81</u> <u>조의18에 따라 감찰을 받는</u> <u>사람</u> <u>제10편 법원의 경비</u>
---------------------------	---